

부산지방법원 2019. 12. 12 선고 2019가단314564 판결 [구상금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

담당변호사 최병주

피고1. 유한회사 B

특별대리인 C

2. D

3. E

4. F

5. G

6. H

변론 종결2019. 11. 21.

판결 선고2019. 12. 12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유한회사 B, D은 연대하여 19,922,250원 및 그 중 8,770,891원에 대하여 2000. 9.

2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,

나. 피고 유한회사 B, D과 연대하여 망 I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가.항 기재 돈 중

1) 피고 E은 8,538,107원 및 그 중 3,758,953원에 대하여 2000. 9. 2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

19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,

2) 피고 G, H은 각 5,692,071원 및 그 중 2,505,968원에 대하여 2000. 9. 2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

각 지급하라.

2. 피고 F는 원고에게 충남 금산군 J 구거 231㎡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1995. 7. 31. 접수 제1506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피고 유한회사 B(이하 '피고 회사'라 한다), D, F에 대한 청구

가. 청구의 표시: 별지 '청구원인' 및 '변경된 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나.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2. 피고 E, G, H에 대한 청구

가. 판단

갑 제1호증, 제3호증,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는 피고 회사, 피고 D, I(이하 '망인'이라 한다)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소194468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, 위 법원은 2009. 6. 11. '피고 회사, 피고 D, 망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,922,250원 및 그 중 10,016,487원에 대하여 2000. 9. 2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%의

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'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(이하 '이 사건 이행권고결정'이라 한다)을 하였고,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2009. 7. 1.경 확정된 사실, 원고는 위 돈 중 1,245,596원을 변제받아 이를 원금에 충당한 사실,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, 한편 망인은 2015. 5. 8.경 사망하였고, 망인의 상속인들인 망인의 부인 피고 E 및 자녀들인 피고 G, H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, 피고 E, G, H은 2016. 8. 16. 대전자정법원 2016ㄴ단958호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심판을 받아, 그 무렵 위 심판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.

나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에게 피고 회사, D과 연대하여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, 피고 E은 8,538,107원(= 19,922,250원 × 상속분 3/7, 원 미만 버림, 이하 같다) 및 그 중 3,758,953원[(원금 10,016,487원 - 변제금 1,245,596원) × 3/7]에 대하여 2000. 9. 2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, 피고 G, H은 각 5,692,071원(= 19,922,250원 × 상속분 2/7) 및 그 중 2,505,968원[(원금 10,016,487원 - 변제금 1,245,596원) × 2/7]에 대하여 2000. 9. 2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민희진

별지